

# 「도로교통량 조사지침」 일부개정(안)

## 1. 개정이유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431호)에 따라 「도로교통량 조사지침」 국토교통부 예규에 대해 유효기간을 재설정 하고자 하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유효기간 도래 전 기간 재설정\*(3년 연장)

\* 현재: 2023년 3월 31일 → 변경(재설정): 2026년 3월 31일

## 3. 규제 분석 및 평가

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협의 결과(국조실, '23.3.7.), 유효기간 도래 전 기간 재설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추가로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규제 비대상

## 4. 향후 추진계획

- 규제심사 : '23. 3월
- 발령 : '23. 3월

국토교통부 예규 제2023-362호

## 「도로교통량 조사지침」 일부개정안

「도로교통량 조사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28조(유효기간) 이 예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### 부 칙

이 예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8조(유효기간) 이 예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<u>2023년 3월 31일</u> 까지 효력을 가진다.	제28조(유효기간) 이 예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<u>2026년 3월 31일</u> 까지 효력을 가진다.